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기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2호)

- 1)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
- 2)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3일의 청원휴가 부여
- 3)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

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가 사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제1항제3호)

대체복무요원이 의료기관에서 제1급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바목 중 “1일”을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10일”을 “20일”로, “15일”을 “25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재해구호휴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제32조제1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여부 검사를 받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대체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대체복무요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원휴가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 <u>1일</u>	바. ----- ----- <u>3일 이</u> <u>내</u>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u>10</u> 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우에는 <u>15일</u>) 이내	사. ----- <u>20</u> 일----- ----- <u>25일-</u> ----
<신 설>	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 산한 경우: <u>3일</u>
<신 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 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 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재해구호휴가 5일(같은 법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39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2641